

#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2020. 9. 25.(금)

경 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목 차

1. 일반현황
2. 법 개정사항 및 전달사항
3.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4. 대기환경보전법 설명
5. 물환경보전법 설명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 1

## 일반 현황

1. 경기도광역환경사업소 조직현황
2.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3. 지도 · 점검 시 숙지사향

## 1. 경기도 환경관리 조직 현황

### ○ 환경국 : 6개과, 1사업소(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 기후에너지정책과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추진, 에너지 관련업무 추진
- 미세먼지대책과 : 미세먼지대책 추진,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 북부환경관리과 : 경기북부(한수이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경기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산업단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허가, 신고 등

## 2.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현황

- 구 성 : 9팀 43명('18.10. 1. 조직개편) / 현원 9팀 41명
- 주요기능
  - 환경관리팀 (5명) :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등
  - 환경허가팀 (7명)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인허가 및 환경컨설팅
  - 환경점검 1팀 (10명) : 반월시화 국가산단 지도점검
  - 환경점검 2팀 (4명) : 수원, 오산, 화성 지역, 완충녹지 조성사업
  - 환경점검 3팀 (4명) : 평택, 안성 지역
  - 환경점검 4팀 (3명) : 의왕, 안양, 과천,군포,성남 지역
  - 환경점검 5팀 (4명) : 김포, 광명, 시흥, 안산, 고양, 부천지역
  - 환경점검 6팀 (3명) :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등 북부지역
  - 환경점검 7팀 (3명) :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지역



## ○ 연 혁

- '02. 10. 1. : 1담당 12명
  - ※ 환경부 → 경기도 국가산단 배출업소 관리업무 이관
- '03. 4. 17. : 2담당 23명(도청) /환경보전과
- '05. 10. 24.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 (3담당 28명)
- '17. 1. 02. : 3팀 25명
- '17. 3. 14. : 4팀 26명
- '18. 3. 30. : 5팀 30명
- '18. 10. 1.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조직개편 (9팀 43명)

## ○ 관리범위

-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 대기·수질 1~2종사업장 지도점검
  - '18. 1. 1. 기준 72개 산업단지 (국가 4개, 지방 68개)

### 3. 관할 구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도점검 관할구역



## 4. 팀별 구역 및 배출업소 현황('20. 1. 1. 기준)

구분	담당지역	배출업소 점검현황			비고
		소계	대기	수질	
합계	경기도 전역	4312	2135	2177	
환경점검1팀	시화 · 반월공단	2017	1044	1013	
환경점검2팀	수원 · 화성 · 오산	544	278	266	
환경점검3팀	평택 · 안성	491	258	233	
환경점검4팀	의왕 · 과천 · 안양 · 군포 · 성남	205	70	135	
환경점검5팀	김포 · 광명 · 시흥 · 안산 · 고양 · · 부천	397	226	171	
환경점검6팀	포천 · 연천 · 양주 · 동두천 · 의정부 · 파주 · 구리	520	230	290	
환경점검7팀	용인 · 이천 · 광주 · 하남 · 여주 · 양평 · 남양주 · 가평	138	69	69	



## 5.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20. 6. 1. 기준)

구분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소계	대기	수질	소계	대기	수질	
합계	1251	62	631	205	95	110	16.4
환경점검1팀	476	235	241	98	28	70	20.6
환경점검2팀	169	88	81	8	4	4	4.7
환경점검3팀	191	102	89	38	29	9	19.9
환경점검4팀	90	35	55	1	0	1	1.1
환경점검5팀	134	69	65	7	2	5	5.2
환경점검6팀	124	51	73	44	28	16	35.5
환경점검7팀	67	40	27	9	4	5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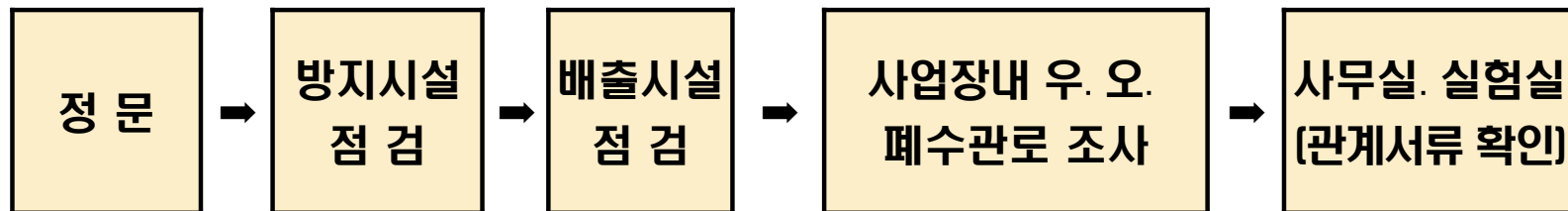
## 6. 지도·점검 시 숙지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사업장 출입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
-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행정 및 기술적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받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것임을 설명

## 7. 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 □ 배출업소 현장 점검 순서



### □ 정문

- 신분증 제시 후, 방문목적(대기 및 폐수등 지도점검)을 밝히고, 별첨 지도점검 공무원 안내문을 교부한 후, 안내문을 간단히 소개
- 곧바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숙지한 정보에 대하여 방지시설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등] 취약한 분야부터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함

## □ 방지시설 점검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검체 의뢰
-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육안 검사하고 최종 방류구 등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시에는 적산 유량계, 적산전력계, 압력손실 등 주요한 사항을 현장에서 메모하여 운영일지 등과 비교

## □ 배출시설 점검

- 환경기술인 등 업소 관계자 입회 하에 제품 생산 공정별 원료의 투입구 부터 제품의 출하 지점까지 공정 중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중심으로 처리계통 등을 확인

## □ 사업장 내 우·오·폐수관로 조사

- 우수, 오수, 폐수배관 관망도를 근거하여 관로의 오점속 등을 확인한다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맨홀을 시범적으로 열어보고 인근 간선수로(하천)의 상태를 관찰한다.

## 참고) 분야별 지도점검 기관

기 관		관 리 업 무			
		배 출 시 설	약 취	폐 기 물	유 독 물
경기도	환경안전 관리과	- 한수 이남 1~2종 허가, 신고(산업단지 외)	X	X	X
	북부환경 관리과	- 한수 이북 1~2종, 산업단지 허가, 신고	X	X	X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및 산업단지 외 1~2종 사업장 지도점검	X	X	X
김 포 시		- 김포 산업단지 외 3~5종	0	0	X
그 외 시군		- 도 관장 외 사업장	0	0	X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합동방제센터)		0	0	0	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기업무 전 분야 점검

## 2

# 법 개정사항 및 전달사항

1. 자가측정제도 관련 개정사항
2. 경기도 법개정 건의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4.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

# 1. 자가측정제도 관련 개정사항

## 자가측정제도

### ○ 개정사항 [시행 '20. 5. 27.]

개정사항	종전	현행
자가측정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조작,누락, 방해	없음	
반기별 측정 결과 제출	없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자가측정 [ '21년 시행]



## 2. 경기도 법개정 건의 사항

자가측정	현행	개정안
자가측정 미이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측정결과 조작,누락,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유지
반기별 측정결과 미제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삭제 (대안: 측정내역 자가입력)

○ 한시적 유예: 수요-공급 불균형 등 사유

⇒ **환경부 일부 수용**

- 한시적 유예: **2020년 하반기까지**

- 측정주기 조정: **2020년 하반기분 1/2 감경**

### 3.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 질소산화물 추가(시행령 제23조 제1~2항)

- 대기 기본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항목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시행규칙 별표8)

- 먼지 ·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허용기준 강화
- 카드뮴 ·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 배출허용기준 강화
- 벤조피렌 · 스틸렌 등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일부 신설(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추가
- 탄화시설 중 용적 100cm<sup>2</sup> [종전: 150cm<sup>2</sup> ]
- 발전시설 중 도서지방 추가
- 보일러 · 흡수식 냉 · 온수기 신설
  - \*2005~2010: '21년까지
  - \*2011 이후: '22년까지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연소시설 및 성형시설 신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신고 대상지역 확대

- 대기환경 규제지역 확대(15개 시→28개 시)
  - ⇒ 용인, 화성, 평택 등 13개 시 추가
- 신고기한: 2020. 12. 31.[한시 허용]
- 법령 변경: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4.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

### 폐수처리업 등록제 변경(물환경보전법 제62조)

- 등록제 **신고** → **허가제**
- 시행일: 2020. 11. 27.

###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 **COD** → **TOC**(총유기탄소량)
- 적용시기: 공공폐수처리시설( '21년)  
일반폐수처리시설( '22년)  
신규폐수배출시설( '20년)

## 기타수질오염원 관리강화(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시설로 포함
- 렌즈제작시설 1대 이상( '21.6.30. 까지)

##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업종 확대(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5)

-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35→82)
  - \*별표4 배출시설 분류
- 시행일: 2020. 1. 1.

## 수질 TMS 설치 대상 확대

- 폐수수탁처리업(법 제62조 제3항)
  - \* 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를 위해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폐수재이용업만 제외)
- 시행일: 2020. 10. 17. [시행령 별표7 참고]
  - \* 공공폐·하수처리시설(700m<sup>3</sup> /일 이상)  
현행: 1~3종 사업장, 공동방지사설(200m<sup>3</sup> /일 이상)

# 3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 1. 절차(1)

구분

점검내용

점검준비

-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채수병 준비, 차량배차 등  
[※ 점검인원 : 2인 1조]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폐수 점검표에 의거  
점검)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확인  
· 약품적정투입 여부, 폭기조 미생물상태 확인  
· 방류수 수질상태 확인 및 채수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 1. 절차[2]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 점검표에 의거  
점검)

↓

-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 대기오염배출가스 양호 여부 확인(※ 필요시 오염도검사 의뢰)
- 적산전력계, 송풍기 작동 확인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활성탄, 세정수, 필터)교체 확인

**사업장 내 · 외부 점검**

- 사업장내 · 외부 대기 · 폐수 무허가시설 설치여부 확인
- 무허가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일, 용량 체크 및 사진촬영

## 1. 절차(3)



**점검결과 확인**  
**[해당 사업장 사무실]**

- 점검한 사항과 허가증 대조 및 기타사항 확인
  - 시설용량 및 시설 수 등 확인
  -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최근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법규준수여부 서류 확인
-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위반확인서 징구
    -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으로 하여금 날인조치

## 2. 점검표 및 확인서(1)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input type="checkbox"/> 대기 중, <input type="checkbox"/> 폐수 중,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 중 )						
<b>1. 사업장 현황</b>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환경기술인			
지역구분			생산품 종류			
업종			주생산품량 (연대출액)			
<b>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등)</b>						
<b>3. 단위방지시설별 ( )개월 운영현황(최소 1개월 이상)</b>						
대기	방지시설명	허가용량(m <sup>3</sup> /분)	자가측정 용량(m <sup>3</sup> /분)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전기사용량 (kw)
수질	일 가동시간	용수사용량 (m <sup>3</sup> /월)	폐수배출량 (m <sup>3</sup>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전기 사용량 (kw)	폐수위탁량 (m <sup>3</sup> /월)

※ 상기 "흡수액 등"은 방지시설별 소모품(예, 활성탄, 이파포, 살수액, 분진 등)으로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책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급		성명	(인)	

## 2. 점검표 및 확인서(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년월일		허가(신고)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명		선임일자		
	자격		자격증번호		
	직위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지역구분		
업종	년월일	종별	생산품		
		시설명	용량	대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small>*단위시설별 작성</small>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허가용량(㎡/분)	가동시간(일)	원료사용량
	자가측정 공량(㎡/분)	전기 사용량(kw)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 2. 점검표 및 확인서(3)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 기 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업장	소재지				
	수역	<input type="checkbox"/> 청정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나	<input type="checkbox"/> 특별
	지역구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상업	<input type="checkbox"/> 농지	<input type="checkbox"/> 공업 <input type="checkbox"/> 공단 <input type="checkbox"/> 가타(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					
폐수처리 방법			폐수처리능력 (m <sup>3</sup> /일)		
용수 사용량	1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폐수발생량	1일 최대발생량	m <sup>3</sup>
	1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1일 평균발생량	m <sup>3</sup>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배출량 (m <sup>3</sup>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일 가동시간		전기 사용량 (kw)		



## 2. 점검표 및 확인서(5)

발급번호		<b>시료채취 확인서</b>		기관장인		
광역-2020-206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명 : (종 별 : 대기 중, 수질 중)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 (법인(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2020년 월 일 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시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료채취와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료명	채취지점 (검사배출구)	수량	채취일시		비고 (용기비)	
			1차	2차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 등 증명자료 첨부						
2.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항목: ]						
구분	배출량				비고	
가 및 학	측정유량( )㎥/일, 이론공기량( )㎥/일(공기비 ), 최대시설용량( )㎥/일, ( )㎥/시간					
오수 및 폐수	방류량( )㎥/일 * 산출근거 : 20 - - 20 - - (30일간) ( ) ㎥ - - ㎥ ) ÷ 30일 = ㎥/일				pH :	
확인자(본인/대표자)	2020년 월 일					
임원자(사번·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 (생년월일 : )					
	(인) (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 3. 역추적 방식을 활용한 특별점검

#### ● (조사절차)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 맨홀



제조설비

### 3. 역추적 방식을 활용한 특별점검

- **[확인방법]**

-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출 유무와 유출정도** 확인



### 3. 역추적 방식을 활용한 특별점검

● **[점검결과]**

- 20. 4. 1.~ 20. 4. 28. 기간 동안 35개 업체 적발

위 반 사 항(건)					조 치 사 항(건)										병과 고발	폐수시료 채취및검사 (건)
계	기준 초과	비정 상 가동	무허 가	기 타	계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 타			
35	14	-	10	11	35	2	6	15	10	-	-	2	-	14	36	

# 4 대기환경관련법 설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 **[변경허가]** 허가된 배출시설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허가보다 50%이상 증설(**특정대기유해물질은 30%**) , 시설용도 추가
- **[변경신고]** 위 경우가 아니거나 신고 시설에서의 변경
  - 변경 전 신고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동종시설 증설·교체·폐쇄, 원료(연료)변경
  - 변경 후 신고 : 사업자(대표자)변경 60일 이내, 시설임대 30일 이내  
허가(신고)된 물질이 아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물질이 특정물질이면 허가여부 판단대상

##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도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 \*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 “미가동” 으로 기재**

☞ **위반시 조치사항** : 대기 -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경고  
수질 -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경고



## 자가측정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

### \*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처분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기술인 임명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함.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위반시 조치사항 : 대기 -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경고**  
**수질 - 과태료(200만원 이하) 및 경고**

## 〈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 〈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환경기술인 교육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매 3년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관 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항
- 위반시 : 과태료(1차 60만원)

# 5 물환경보전법 설명

## 공공수역에 누출 유출

- **[공공수역 무단방류]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경우**
  - 고발, 오염물질 방지 및 제거 조치, 행정대집행 처분 등
- **행위금지 사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유류), 유독물질, 농약,
  -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및 오니, 자동차 세차
  - 기준이상(1천키로 등)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투기행위

즉각 보고 병행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 **[설치허가] 법 제33조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 **[설치신고] 위 경우가 아닌 시설**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신고물질이 특정물질이면 허가여부 판단대상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 **[변경허가]** 허가된 배출시설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허가보다 50%이상 증설(특정대기유해물질은 30%), 시설용도 추가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수질오염시설 개선이 필요
  - 폐수무방류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
- **[변경신고]** 위 경우가 아니거나 신고 시설에서의 변경
  - 신고량보다 50%이상 증설, 사업장 종변경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변경 허가 제외)
  -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방지시설 면제자 추가 방지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일부 폐쇄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임대, 위탁자 변경
  - 기타 허가 및 신고내역 변경, 허가(신고)된 통상 30일 이내

##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

1.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정이외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행위 다만, 인허가 희석 인정시 제외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폐수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

-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위탁처리 폐수 한정)
- 5일 이상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설치 및 계측기  
단, 폐수배출시설 직접 위탁시 별도 보관시설 면제
- 성상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 금지.  
기타 사진 현상액, 정착액, 세척액은 분리수거 보관하며 표지판 부착
- 폐수수탁처리계약서/수탁확인서 제시
- 폐수 외부 배출 금지
- 재이용 어려운 오니 반출시 신고 위탁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실적 보고
- 위탁 기록부 작성 및 1년간 실적 보존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1. 시설의 가동시간
2. 폐수 배출량 및 액품 투입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도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 \*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업”, “미가동” 으로 기재**

☞ **위반시 조치사항 : 수질 -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경고**

## 환경기술인 임명

### 【환경기술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함.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 위반시 조치사항 : 대기 -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경고  
수질 - 과태료(200만원 이하) 및 경고**

# 6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1. 지도점검 방향
2. 지도점검 주요내용
3. 위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1. 지도점검 방향

## 기본방향

-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통합 지도점검 실시
-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병행 및 민·관 합동점검 추진

## 정기점검

- 종별·등급별 구분에 따른 차등점검 (년 4회 ~ 2년1회)
- 대기 및 폐수오염도 검사 강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수시점검

- 취약시기(명절 연휴·장마철 등) 특별 점검 : 5월, 7월, 9월
- 검찰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환경오염 민원 발생시

○ 배출업소 등급 분류

등 급	적용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 점검 결과)
우수관리	-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
중점관리	- 3회 이상 행정처분,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 - 부적정 운영 1회 이상 위반,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사업장

○ 정기 지도점검 기준

등 급	정기점검 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 일반 중점	1 3 4	1/2년 2 4	1/2년 2 3	1/2년 1 3	1/2년 1 3



○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비 고
	수 질	대 기	
무 허 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고 발
미 신 고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고 발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변경신고	경 고	경 고	과태료
비정상가동	조업정지	조업정지	고 발
가동개시 미신고	조업정지	경 고	고 발
운영일지 미작성	경 고	경 고	과태료
자가측정 미이행	-	경 고	과태료
환경기술인 미임명	선임명령	선임명령	과태료

## 2020년 세부 추진방향

### 1) 단속 일원화에 따른 도내 지역별 환경현안 맞춤형 대응 강화

- 민원 다발, 언론보도, 지역별 현안 사업장 등 집중관리로 현안해결

### 2) 시·군 관할 환경 취약업체 도-시·군 합동단속 확대

- 소각장, 아스콘 제조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민원 사업장 중점관리
- 드론, 중금속 측정기 등 과학적 측정장비 활용한 단속 시 사각지대 해소

※ 시·군 소관 중점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강화(시·군별 최소 10%)

### 3) 도민참여로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환경오염 배출업소 감시활동 민간인 참여로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처
- 명예환경감시원, 시민단체 등 유기적 업무협조로 민간자율감시 확대

## 주요 오염원 관리방안

### 1) 소각장, 발전소, SRF 등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도-시군 기획단속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까지 단속 강화
- 다이옥신,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정기적으로 오염도검사 실시(연1회)

### 2) 시·군 관할 사업장과 소규모 무허가 환경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 시·군 단속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도-시군 합동단속 실시
- 시·군별 상습민원다발 등 문제사업장 현황을 받아 단속계획 수립
- 환경시설 임대차업체 확인 등 무허가 배출시설 적발하여 강력조치

## 주요 오염원 관리방안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상습 위반사업장 중점관리

- 동일 상습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 될 때 까지 지속 단속 실시
- 환경닥터제, 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기술지원 추진

### 4) 배출업소 단속 중 폐기물 소각 등 불법 행위자 병행 단속

- 고물상, 건설공사장 등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 행정조치
- 구역별 드론(3대)을 활용하여 상공에서 불법소각 단속

### 5) 하천으로 방류하는 폐수배출업소 특별감시 강화

- 하천 방류 폐수배출업소 도·시·군 일제 합동단속실시
- 중금속측정기(간이테스트기)를 활용한 과학적 추적 및 감시
- 수질오염 측정망을 활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월1회)

## 2. 지도점검 주요내용

### 공통분야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가동개시 신고 이행 여부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법정교육 등

### 대기분야

- 자가측정 실시 및 운영일지 작성
- 미신고 가지배출관 설치, 후드 덕트 훼손방치 여부 등

### 폐수분야

-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 운영일지 작성,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행위

### 3. 위반사업장 사후관리

#### 사법조치

- 대상 : 방지사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가동개시 미신고 등
- 수사 : 점검기관의 환경특별사법경찰 또는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 청문실시

- 대상 : 허가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 사유 : 행정처분 전 사업자로 하여금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 행정처분

-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는 사업자에게 우선통보 후 최대한 신속히 처분

## 인터넷 공개

- 대 상 :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고발시 등
  - 시 기 :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
  - 공개매체 : 경기도 홈페이지
  - 삭 제 : 30일 경과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인정 시
- ※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 : 기간 중 2~4회 이상 확인
- 개선명령(배출허용기준 초과) : 개선이행 완료보고 시(오염도 검사 병행)
- 방지시설 부식마모, 훼손 등 경고 : 즉시 개선여부 확인

## 4.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이화학 시험시설 전경



시험시설내 세척시설



○ 위반사례

- **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sup>m</sup><sup>2</sup> 이상일** 경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 허가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 m<sup>3</sup>

\* 신고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1일 최대 0.1 m<sup>3</sup>**

○ 관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벌칙내용

- 허가대상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신고대상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사용중지 기간은 허가, 신고 후 가동개시 신고 수리시 까지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세척시설 전경



세척시설 내부

## ○ 위반사례

- 세척시설 설치 운영시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 허가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 m<sup>3</sup>

\* 신고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1일 최대 0.1 m<sup>3</sup>

○ 관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 벌칙내용

- 허가대상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신고대상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사용중지 기간은 허가, 신고 후 가동개시 신고 수리시 까지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금속가공시설 전경



수용성 절삭유

## ○ 위반사례

-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설치 운영시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 허가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 m<sup>3</sup>

\* 신고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1일 최대 0.1 m<sup>3</sup>**  
**[전량 재이용시 기계기구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적으로 산정]**

○ 관 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 벌칙내용

- 허가대상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신고대상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사용중지 기간은 허가, 신고 후 가동개시 신고 수리시 까지**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 위반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위 반 내 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 조 치 사 항 :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 혹은 폐쇄
- 위 반 내 용
  - 상기 업체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득하고 조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주조공정 원수 및 방류수에서 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페놀, 구리를 배출하고 조업한 사실을 확인함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항목명	시 령 원 수				비교
	2-1-1-7	2-1-1-8	2-1-1-9	2-1-1-10	
COD(mg/L)	-	120.3	-	-	
SS(mg/L)	-	8.1	-	-	
T-N(mg/L)	-	3.748	-	-	
T-P(mg/L)	-	0.116	-	-	
N-H(중)(mg/L)	-	1.4	-	-	
ABS(mg/L)	-	0.19	-	-	
CN(mg/L)	ND	ND	ND	0.02	
페놀(mg/L)	ND	0.025	0.024	0.197	
Cu(mg/L)	ND	ND	0.325	0.008	
Cd(mg/L)	ND	ND	ND	ND	
Pb(mg/L)	ND	ND	ND	ND	
As(mg/L)	ND	ND	ND	ND	
Se(mg/L)	ND	ND	ND	ND	
Hg(mg/L)	ND	ND	ND	ND	
Cr6+(mg/L)	ND	ND	ND	ND	
TCE(mg/L)	ND	ND	ND	ND	
PCE(mg/L)	ND	ND	ND	ND	
클로로포름(mg/L)	ND	ND	ND	ND	
디클로로메탄(mg/L)	ND	ND	ND	ND	
벤젠(mg/L)	ND	ND	ND	ND	
사염화탄소(mg/L)	ND	ND	ND	ND	
1,1-디클로로에틸렌(mg/L)	ND	ND	ND	ND	
1,2-디클로로에틸렌(mg/L)	ND	ND	ND	ND	
브로모포름(mg/L)	ND	ND	ND	ND	
염화비닐(mg/L)	ND	ND	ND	ND	
아크릴로니트릴(mg/L)	ND	ND	ND	ND	

<용수>      <방류수>      <주조원수>      <세척원수>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안, 페놀, 구리]  
배출 시험성적서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 위반사례

- 폐수 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상 불특정 몇일의 폐수배출량이 50%이상 배출하였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1일 최대 폐수 배출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관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 벌칙내용 :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경고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방지사설 비정상 가동

- 위반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위반내역 : 폐수를 방지사설로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
- 조치사항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10일
- 위반내용
  - 상기 업체는 기타비철금속 제품제조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조업하면서,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사설로 유입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폐수배출시설인 알칼리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사설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함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배출시설  
[알칼리처리시설]  
전경



알칼리폐수가 흘러내려  
우수구로 유입된 흔적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알칼리폐수가 흘러내려  
우수구로 유입된 흔적



우수구에 고여있는  
알칼리폐수

## **【폐수 공공수역 유출 행위】**

### ○ 위반사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 대기오염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의 세정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우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함

○ 관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벌칙내용 : 고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폐수 공공수역 유출 행위】**



**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장면**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무단방류

- 위반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위 반 내 역 :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방류
- 조 치 사 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 반 내 용
  - 상기 업체는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제조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위탁처리하여야하나
  - 점검당시 CNC머신에서 나오는 칩을 외부보관하면서 칩에 함유된 절삭유가 우수관로로 유입되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무단방류



외부에 보관중인 칩마대



외부에 보관중인  
칩마대에서 우수구로  
절삭유 포함 폐수 유출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무단방류



우수구에 유입된  
절삭유 포함 폐수



하천으로 유출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 위반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위반내역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 유출
- 조치사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내용
  - 상기 업체는 볼트 등 건설자재 도금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조업하면서,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 점검당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크롬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배출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함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건물 지하바닥에 가득한 크롬폐수



폐수 비밀배출을 위해 설치된 펌프

## 폐수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발암물질 1천 배... '중금속 폐수' 몰래 배출했다 적발 | 채널A 뉴스



##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위 반 내 역 :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
- 조 치 사 항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 반 내 용
  - 상기 업체는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조업하면서 동법 제3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적정처리 하여야 함에도,
  - 점검 당시 대기배출시설인 저장시설  $4\text{m}^3 \times 4\text{대}$ , 계량시설  $0.8\text{m}^3 \times 1\text{대}$ , 포장시설  $0.8\text{톤/hr} \times 1\text{대}$ 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는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  $35\text{m}^3/\text{min}$ ]의 모터 연결부위로 정화되지 않는 공기를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실을 확인

##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사례 :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여과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모터  
연결 부위로부터  
나와 쌓인 오염물질

## 대기배출시설 관련 주요 위반사례

사례 :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한 행위**】

### ○ 위반사례

- 대기 배출시설 가동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가 흡입 되도록 하는 행위

### ○ 관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된 방지시설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이 조업정지됨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기가 방지시설로 흡입되는 상태**





가지배출관을 통해 공기가 방지시설로 흡입되는 장면

## 【방지시설 미 가동】

### ○ 위반사례

- 대기 배출시설 가동시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배출하여야 하나
-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세정펌프를 가동치 않아 세정수가 분사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행위

### ○ 관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된 방지시설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이 조업정지됨

## 【방지시설 미 가동】



방지시설인 흡수시설에 세정수가 분사되지 않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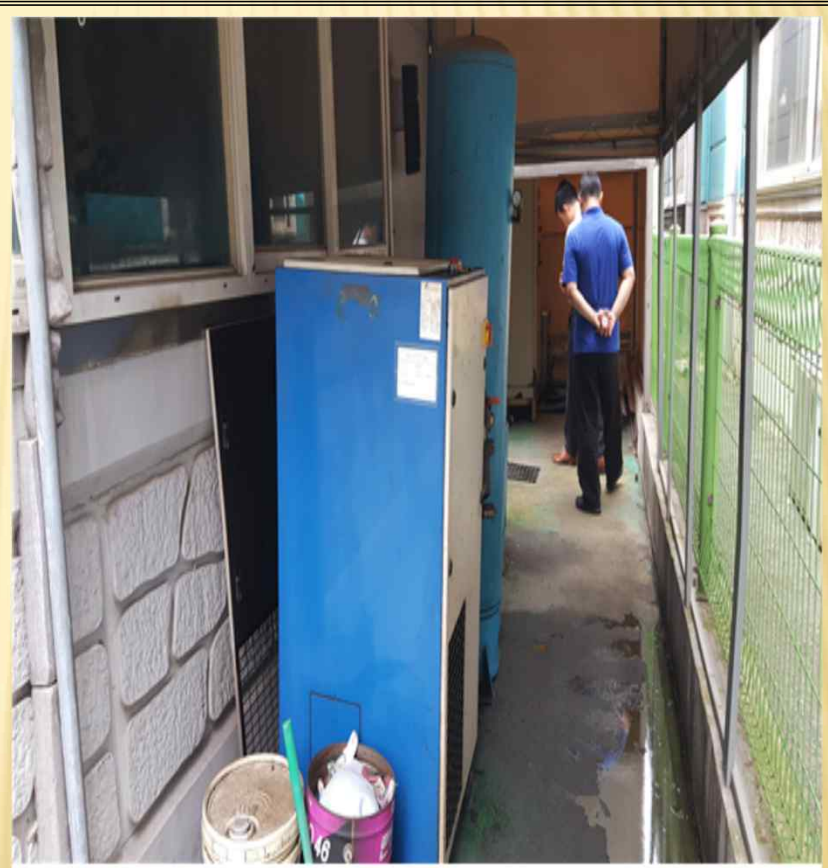
## 대기분야

- 위반사례 : 도장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
  - 업종 구분 없이 도장시설 용적이  $5\text{m}^3$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시설을 설치 운영중이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조업
- 관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벌칙조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토장시설 분사 장치



토장시설 동력시설

○ 위반사례 : 혼합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중 용적이 3<sup>m<sup>3</sup></sup>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을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조업

○ 관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벌칙조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



혼 합 시 설

## 【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



혼 합 시 설



## 기타 비정상 가동 사례



혼합시설 투입구 개방하여 작업



관로 멤퍼를 담은 상태로 작업

##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 **○ 위반사례**

- 배출시설 및 부대시설인 후드 덕트가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행위 방치**
- 대기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의 여과백이 터진 상태로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고 조업경우**

**○ 관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200만원 이하) 및 경고**



**덕트 연결 부위가 훼손 방치**



**덕트 연결 부위 파손**

**감사합니다.**